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13 선고 2021가단520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7. 9.

판 결 선 고 2021. 8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7,152,872원 및 그 중 46,450,390원에 대하여 2020. 6. 7.부터 2021. 6. 11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유지현

별지